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매뉴얼(2023.03)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략...)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목적 외의 전자공문 회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중략...)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6.2.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전파하고,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12)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 지침자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내, 목적외)(2020.8) - 교육부 개인정보포털 / 참고자료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2014.01)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포털 자료마당 / 지침자료

용어 정의

- ◆ 정보주체 : 교직원 및 학생
- ◆ 동의시기 : 채용 및 입학 시
- ◆ 이용 : 기존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학 업무에 이용
- ◆ 제3자 제공 : 기존 수집한 개인정보를 요청기관에 제공
- ◆ 목적 내(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 기존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목적이 일치하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 제공대장 작성 안 함
- ◆ 목적 외(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 기존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목적이 불일치하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 - 제공대장 작성 함

※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 일반정보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매뉴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절차(관련자)	주요내용
1. 관련근거 검토 (개인정보 취급자)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관련근거 검토(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동의절차 이행 (개인정보 취급자)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3. 대장 기록 및 관리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함
4. 제공승인 획득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사무처장)으로부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승인 절차 진행
5. 주요내용 공개 (개인정보 담당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
6.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취급자 → 제 공받는 자)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7. 조치결과 제출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취급자)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학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취급자(행정부서), 개인정보 담당자(총무팀), 개인정보 책임자(사무처장)

※ 안전성 확보조치(법 제18조 제5항)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안전성 확보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안전조치의무 예시

1. 안전조치의무의 예 : 파일 비밀번호 설정, 제공자 본인외 이용금지 등
2. 외부기안문 안내문구 예시 : 송부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목적 외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면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료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매뉴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여부 확인

☐ 기존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목적이 일치하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구분		정보주체의 동의		업무 예시		제공대장 작성 여부
목적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수집목적 범위 내 (교직원 및 학생)	→	4대 사회보험, 사학연금, 근로소득원천징수, 신원조회, 교육통계조사, 국가장학금 등	→	X (제공대장 작성 안 함)

☐ 기존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목적이 불일치하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법 제18조)

구분		정보주체의 동의		업무 예시		제공대장 작성 여부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수집목적 범위 외 * 타 법률에 규정(국정감사 등), 범죄 수사, 법원재판, 전자공문 회신 등	→	포상유공자 추천, 위원 추천(면접위원, 심사위원, 시험감독 등), 장애학생 현황조사, 인구주택통계조사 등	→	O (제공대장 작성 함)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나, 제3자 제공대장은 작성해야 함

* 제3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 주민등록번호는 구체적인 처리요구, 허용에 대한 법령이 없다면 동의받아도 제3자 제공 불가능

※ 위원추천 시 수신공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대학이 아닌 외부기관의 동의서이므로, 목적외 제3자 제공대장을 작성하거나 위원추천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기존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에 상기 업무가 기재되어 있음 : 목적 내 이용 (제3자 제공대장 작성 함)

☞ 기존 수집한 개인정보의 목적에 상기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대장 작성 안 함)

제공대장 작성

- ◆ 통합정보시스템 / 직원정보광장 / 정보보안 / 개인정보의 목적 외(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 기안 : 개인정보취급자(결재선 : 담당 - 팀장) / 접수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총무팀)
- ◆ 결재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사무처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매뉴얼

본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안내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에 의한 업무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에 의한 업무 : 교육통계조사, 학력조회, 장학금 등
 - **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의거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은 본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남보건대학교 홈페이지 > 정보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신입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 *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근거 : 입학 원서접수 시 동의(2013학번부터 그 이후 학생)
 - ** 통합정보시스템 동의메뉴 신설 : 2021년 3월 학적을 가진(2021년 이전 학번 포함) 모든 학생은 통합행정시스템에서 최초 1회 동의하게 됨 (대학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대한 동의(기존 동의를 인지하지 못한 자에 대한 공지) 및 법률에 따른 제3자 제공에 대한 고지)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자 - 2011.09.30.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매뉴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관련 비교표

목적 외 이용 · 제공이 가능한 경우	기관유형		공개 (게재)	대장 관리
	공공	공공외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	X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삭제됨)	⊖	⊖	⊖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	○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X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형의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매뉴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관련 비교표

홈페이지 공개와 대장을 같이 관리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들로 구성하면 됩니다.

공개 필수 항목	통합 항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관리대장 항목
	개인정보 또는 파일 명칭 이용/제공 구분 이용/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제공한 형태 이용/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제공받는 목적 이용/제공받는 항목 제한/필요한 조치 요청한 내용	개인정보 또는 파일 명칭 이용/제공 구분 이용/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제공한 형태 이용/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제공받는 목적 이용/제공받는 항목 제한/필요한 조치 요청한 내용
이용/제공한 날짜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제공받는 목적 이용/제공받는 항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예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작성 가이드라인]

상세정보	복사	기안	기안취소	신규	삭제	작업취소	작업저장
제공년도 / 신청상태	2021	작성중	결재진행상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이용	☒ 제3자제공	파일첨부	파일선택	파일다운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4.1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1.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 : 제공하는 개인정보 명 또는 파일명(공문제목)

2. 이용 또는 제공구분 :

- 목적외이용 : 대학 업무에 목적외로 이용
- 제3자 제공 :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목적외로 제공
- * 목적외이용, 제3자 제공 모두 목적외에 해당됨

3.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및 담당자의 소속사항

4.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 개인정보 파일을 송부한 날짜(년월일)

* (O) 0000. 00. 00.

* (X) "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

4.1 주기 또는 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5.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 (암호화 된)파일, 문서

6.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 1호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호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 이용 또는 제공받는 목적 : ○○ 정보 회신

8.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ex)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9.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에게 필요한 제한 및 조치사항을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안전조치의 무)

: 파일 비밀번호 설정, 제공자 본인외 이용금지 등 (해당없을 경우 내용 생략이 가능함)

* 잘못된 사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10. 파일첨부 : 제공한 파일(명단 등)을 첨부(필수)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 후 첨부

11. 기안 : 작업저장 후 기안(결재선 : 담당 - 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작성 예시

상세정보

복사

- 결재선(담당 - 팀장)

기안

기안취소

신규

삭제

작업취소

작업저장

제공년도 / 신청상태

2018

작성중

결제진행상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학년도 졸업생 대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표창 신청 안내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이용

☒ 제3자제공

파일첨부

파일선택

파일다운

[] -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이 표시된 제공파일을 업로드 합니다.(주민번호는 삭제 후 업로드, 공문은 필요없음)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담당자 소속

○○팀

담당자 성명

김○○

담당자 전화번호

02-000-0000

- 직장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담당자의 휴대폰번호는 입력불가함)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0000.00.00

개인정보를 담당자에게 제공한 날짜입니다.

주기 또는 기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 시 까지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암호화된 파일(엑셀)

- 제공형태가 엑셀, 한글 등인 경우에는 '파일'
-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전달한 경우에는 '문서' 로 기재합니다.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법 시행령 00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하는 경우, 법 및 시행령에 근거가 없으면 수집 및 제공이 불가하므로, 법 및 시행령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학년도 졸업생 대상 표창 대상자 정보 송부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공파일 암호화 및 목적외 이용금지, 목적달성후 즉시파기 조치 등 관리철저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⑤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청자

신청일

접수자

접수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사례

관련업무	수집주체(제공기관)	관련 법령 조문	비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중략...)
기타소득(강사료 등) 지급	원천징수의무자(대학)	소득세법 제145조 및 시행규칙 제100조	제145조 제②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주민등록번호 포함)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보험가입	금융위원회,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⑤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중략...)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공인자격증 신청 및 배부	공인자격관리자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2(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공인인증기관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신규임용 및 소속 근로자 인사관리(임용 확정 후 가능, 임용단계에서는 불가)	사업주(대학포함)	소득세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육통계조사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 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입학생 선발, 입학시험, 입학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학적부 작성관리	대학,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7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회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학생 선발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4. 제42조의2에 따른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무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